

	넥스오토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개정차수: 8

개정 이력

차수	제(개)정 일자	시행일자	주요 개정 내용
1	2010-09-28	2010-10-08	초도 제정
2	2012-04-25	2012-05-18	시설감시 내용 포함 및 개인정보보호법 반영
3	2013-11-28	2014-01-01	용어 명확화 및 내용 수정

 개정일: 2024-08	넥스오토 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문서번호 NEX-BO-P-02
		개정차수: 8

4	2014-12-18	2015-01-01	지침 구조 변경
5	2023-12-01	2023-12-01	디오토 상호변경
6	2023-12-05	2023-12-05	CCTV 설치구역 표기
7	2024-08-01	2024-08-01	넥스오토 상호변경
8	2024-08-01	2024-08-01	CCTV 운영 및 시설감시지침 내용 수정

목 차

1. 목적	3
2. 기본원칙.....	3
3. CCTV 운영 기본방침.....	3
4. 설치 위치,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(설치대수/장소가 많아 표시 곤란 시 별첨으로 관리).....	4
5. 관리체계.....	4
6. 관리책임	4
7. 정보의 위탁처리(해당하는 경우만 적용).....	4
8. 수집의 제한	5
9. 정보의 보관	5
10. 보관 및 보관장소.....	5
11. 정보의 파기	5
12. 정보의 제공	6
13. 정보의 제공 범위.....	6
14. 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절차.....	6
15. 정보제공 인가.....	6
16.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의 비밀유지 의무.....	6
17. CCTV 시스템 관리.....	6

	넥스오토 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	개정차수: 8

18. 부록 7

1. 목적

- 1.1 본 규정은 주식회사 넥스오토의(이하 '회사' 또는 '당사'라 한다.)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화재, 도난 등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CCTV(영상정보처리기기)의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임직원과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CCTV운영 및 시설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기본원칙

- 2.1 차량 및 인원이 출입하는 지역은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.
- 2.2 시설의 감시는 CCTV 및 보안요원(인원)에 의한 감시를 하여야 하며, 사업장 특성에 따라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
- 2.3 보안요원(인원)에 의한 시설감시는 주요지역에는 상주근무를 하여야 하며, 비 상주 근무지역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CCTV운영 기본방침

- 3.1 CCTV는 보안 및 화재, 도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
	넥스오토 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	개정차수: 8

3.2 CCTV를 설치·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,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.

3.3 CCTV를 설치·운영하는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CCTV가 작동중임을 공지한다.

3.3.1 설치 목적 및 장소

3.3.2 촬영 범위 및 시간

3.3.3 관리책임자의 성명(직책) 및 연락처

3.3.4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)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

4. 설치 위치,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(설치대수/장소가 많아 표시 곤란 시 별첨으로 관리)

설치위치(장소)	설치대수	촬영범위
1공장	11대	1공장 주 출입구 방향/주차장/공장내부
2공장	11대	2공장 출하장/공장내부/식당 등
총 설치대수	22대	

※ 설치위치 : 첨부 18.2.1. 표시.

5. 관리체계

5.1 CCTV는 다음의 체계로 관리 운영한다.

5.1.1 총괄책임자: CSO

5.1.2 관리책임자: 물리보안 주관팀장

5.1.3 접근권한자: 비상, 안전, 보안 및 CCTV 감시 감독자

6. 관리책임

6.1 관리책임자는 CCTV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조작·유출 등 오남용 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
7. 정보의 위탁처리(해당하는 경우만 적용)

7.1 관리책임자는 CCTV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,

 개정일: 2024-08	넥스오토 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문서번호 NEX-BO-P-02
		개정차수: 8

7.2 위탁처리 업체현황

수탁업체	담당자	연락처
S1	홍길동	02) 000-0000

8. 수집의 제한

8.1 관리자는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·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.

9. 정보의 보관

- 9.1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녹화를 원칙으로 하되,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9.2 수집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의 보유목적에 의하여 별도의 보관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
- 9.3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, 변조, 유출, 훼손 등을 대비하여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관리한다.
- 9.4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영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,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.

10. 보관 및 보관장소

- 10.1 영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10.2 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이며,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.
- 10.3 영상정보를 취급(모니터링)하는 장소 및 보관장소는 제한구역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
11. 정보의 파기

- 11.1 보관기간이 만료 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며,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 하여야 한다.
- 11.2 영상정보처리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파기여부를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12. 정보의 제공

- 12.1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,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

	넥스오토 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	개정차수: 8

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2.1.1 직원이 사건·사고 등에 대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
- 12.1.2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12.1.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13. 정보의 제공 범위

13.1 영상정보 제공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.

14. 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절차

- 14.1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첨부 정보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14.2 화상정보의 제공은 12항의 행정관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.

15. 정보제공 인가

- 15.1 열람 및 자료제공을 12항 정보의 제공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.

16.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의 비밀유지 의무

- 16.1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7. CCTV 시스템 관리

- 17.1 영상감시 프로그램 및 DVR의 O/S는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17.2 장애발생시 형태별로 영상감시프로그램 이상, 네트워크 이상, DVR장치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록한다.
- 17.3 장애발생시 조치사항
 - 17.3.1 장애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장애보고를 한다.
 - 17.3.2 장애유형별로 보수관계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보수한다.
 - 17.3.3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장애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.

18. 부록

18.1 시행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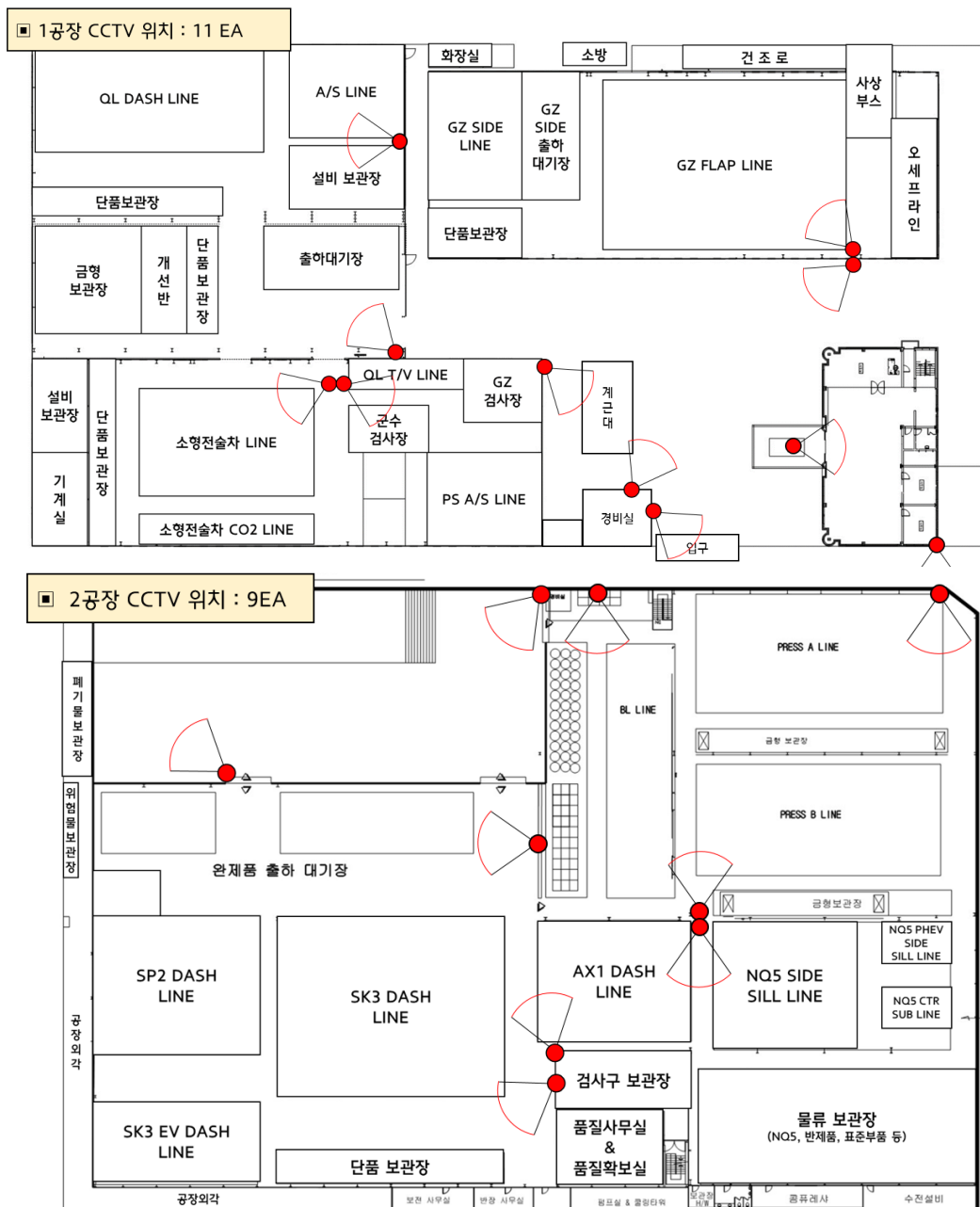
18.1.1 2010년 09월 28일부로 시행한다.

18.2 첨부

18.2.1 CCTV 설치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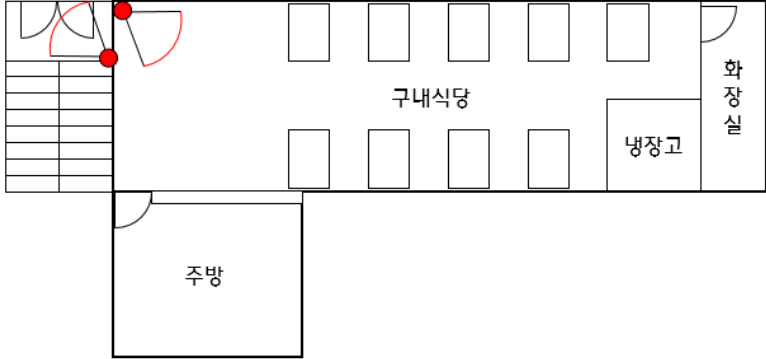
18.2.2 영상정보 확인요청서

18.2.3 CCTV 운영일지



	넥스오토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개정차수: 8

▣ 2공장 구내 식당 CCTV 위치 : 2EA



첨부 18.2.2 <양식#1> 영상정보 확인요청서

영상정보 확인요청서								
<table><tr><td rowspan="2">결 재</td><td>담당</td><td>검토</td><td>승인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	결 재	담당	검토	승인			
결 재	담당		검토	승인				
요청자 인적사항								
확인 목적								
확인 일시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	
기타 참고 사항								

	넥스오토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개정차수: 8

주식회사 넥스오토의 CCTV 관리, 운영 지침서 8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합니다	
20 년 월 일	
성명 :	(인)

첨부 18.2.3 <양식#2> CCTV 운영일지

CCTV 운영일지				
년 월 일 (요일)	결	담당	검토	승인
	재			
CCTV영상 이상유무	일시			
	CCTV명칭			
	내용			

	넥스오토	문서번호 NEX-BO-P-02
개정일: 2024-08	CCTV운영 및 시설감시지침	개정차수: 8

녹화 자료 열람	검색 일시	
	검색 범위	
	검색 사유	
기타사항	장비 고장	
	시스템 고장	
	특이 사항	
보안, 화재, 도난 모니터링 외 목적으로 영상녹화자료를 검색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련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, 영상정보의 검색은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		